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기자회견 >

민사소송 및 박순관 엄정 처벌 촉구 서명 운동 돌입 발표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오후 1시 장 소: 수원지법

주 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6월24일(화) 11:00 참사 현장 1주기 추모제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단 아리셀)

1. 취지

- 2024년6월24일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자 23명 노동자가 아리셀에서 화재폭발로 사망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은 14.6%로 더 증가했고,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도 더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맹탕 대책조차 집행되지 않고, 죽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은 보석 허가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원인 모를 화재였고, 나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사로 사망한 망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피해 유족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 끔찍한 작년 6월24일부터 피해자 유족들은 폭염과 폭우 속에 싸웠고, 폭설로 무너진 에스코넥 농성장을 지키며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화재 폭발로 흩어진 시신을 수습했던 유가족들은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들의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라고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집단교섭을 끝끝내 거부하고,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박순관에게 피해 유가족들은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는 <박순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어제든 오늘도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고 있습니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리셀 참사 피해 유가족과 대책위의 투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공동대표 송성영
- 정부, 아리셀, 에스코넥 규탄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유가족 발언 : 최 현주님
- 아리셀 민사소송 돌입 의미 :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 익찬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박순관 강력 처벌 서명운동 돌입) :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김도원 부분부장 <재판 종료 후 법률지원단, 피해 유가족 입장 발표>
- 사회: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김태운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경과와 현황 (형사소송, 민사소송, 재발방지대책 현황) 서명운동지

첨부 자료 1. 기자회견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23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박순관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정 처벌하라

2024년 6월24일 불꽃과 폭발이 이어진 42초 후에 23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돈벌이에 눈먼 기업의 탐욕과, 반복되는 죽음에도 눈감고 귀 닫은 무책임한 정부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는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거부한 박순관은 법원의 보석 허가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고, 박순관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참사로 사망한 고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운운했던 정부,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재탕 삼탕의 맹탕대책을 발표하더니, 그마저 3건, 26건 민망한 집행이 진행될 동안 그 누구도 찾아보지도 않았던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결국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더 많은 제조업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죽고 또 죽어나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1년 전 그날에 시간이 멈춘 채 싸우고 또 싸워왔습니다. 이 투쟁은 19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이후 가장 많은 산재 피해자 유족들이 가장 길게 싸우고 있는 투쟁입니다.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로 이주노동자와 정주 노동자가 함께 싸우는 최초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폭염, 폭우, 폭설을 뚫고 정부, 국회, 삼성 본사, 경찰서, 박순관 대표 이사 집 까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화성시청, 수원지법 농성에 이어 2024년 10월에 시작된 에스코넥 본사 앞 농성은 올해 4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형사재판, 민사소송으로 법률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처벌 되도록 방청투쟁, 서명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대책, 작은 사업장 안전대책, 불법파견 대책, 산재 피해자 지원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되도록 다시 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 아리셀 참사 주범 박순관을 강력 처벌하라
- 위협의 이주화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수립하라
-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2025년6월23일

첨부 자료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경과와 현황

1. 아리셀 참사 투쟁 경과

일시	주요 투쟁	비고
2024년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발생	2024년 - 8월13일 정부 합동 대책 발표 - 8월29일 박순관 구속영장 발부 - 9월10일 정부 전지 산업 안전대책 발표 - 9월24일 박순관 구속기소 - 10월17일 국회 환노위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 10월22일 박순관 국감증인 출석 거부. 임의동행명령 거부 2025년 - 2월12일 박순관 보석 허가 신청 - 2월23일 박순관 보석허가 석방 - 2월24일 노동부 불법파견 감독결과 발표, 에스코넥은 면죄부 - 3월13일 박중언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
6월28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기자회견및 요구안 발표	
7월1일- 10월8일	화성 시청 분향소 앞 매일 추모제	
7월 2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발족 및 요구안 발표	
7월 4일	서울 추모제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등 주최)	
7월 9일	피해자 지원 중단 통보에 화성시청 농성	
7월10일	에스코넥, 아리셀, 메이셀 중처법, 산안법 고발	
7월22일	민주노총 아리셀 집중 투쟁 돌입, 국회 토론회	
7월22일-9월27일	가족협의회 직접 행동 (국방부, 노동부, 경기도청, 수원남부 경찰청, 에스코넥, 삼성, 박순관 자택 등)	
7월22일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집중 투쟁 돌입	
7월27일	유가족 행진 및 추모제 (서울역)	
8월 8일	서울 집중 추모제 (세종문화회관)	
8월17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희망 버스 문화제	
9월 2일	삼성 본사 앞 추모제	
8월26일- 28일	박순관 구속 촉구 수원지법 농성 투쟁	
10월10일-12월24일	에스코넥 본사 앞 농성 투쟁 돌입 (화)서울 삼성 추모제, (목)에스코넥 집중 문화제	
10월11일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기자회견	
10월21일	1차 재판 (형사재판 방청 투쟁, 입장 발표 등 지속)	
10월29일	아리셀 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 (에스코넥 앞)	
12월 9일	에스코넥 항의 서명 전달 기자회견	
12월24일	삼성 본관 앞 투쟁 문화제	
2025년	형사재판. 집단 민사소송 법정 대응 투쟁 에스코넥 농성장 주 2회 유가족 중심 선전전	
1월21일	삼성 준법감시위 아리셀 안전 심의	
4월 8일	에스코넥 농성장 정리	
4월22일	아리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6월 9일	민사소송 접수	
6월18일	아리셀 형사재판 19차 공판 진행	
아리셀 참사 1주기	- 1주기 릴레이 연속기고 (프레시안) - 6월19일 국회 토론회 (국회) - 6월21일 1주기 추모대회(서울) - 6월23일 1주기 기자회견 (수원지법) - 6월24일 1주기 참사현장 추모제 (아리셀 공장 앞) - 박순관 처벌 서명운동 전개 및 7월 재판부 전달	

2. 형사재판 진행 현황

1) 경과

- 0710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에스코넥, 아리셀, 메이셀을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 0829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등 사전 구속영장 발부
- 군납 밧데리 품질검사 조작, 불법 파견등 아리셀, 에스코넥 불법 사항 적발
- 0924 검찰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박중원 경영본부장등 아리셀과 메이셀 기소, 에스코넥 제외
- 2015.0108 2차공판. 유족 8명 재판에서 박순관, 박중언의 엄정 처벌 직접 호소, 서면 제출
- 0223 박순관은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허가. 박중언 0313 군납 밧데리 검사 조작 추가 기소
- 0224 에스코넥은 불법파견 위반 혐의에서 면죄부. 1차 2차 하청 법 위반으로 결론

2) 형사재판 아리셀 주장 - 법률대리(김앤장)

- 6월24일 참사는 원인 모를 화재 폭발로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음
-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는 박중언 경영본부장임. 박순관은 명목상 대표이사 였고, 경영관련 박중언 과 논의한 것은 경영 선배로서의 조언에 불과함.
- 리튬과 리튬 밧데리는 별도이고, 리튬 밧데리는 위험물질로 미 지정, 별도의 비상 출입구 설치 의무 없음
- 6월24일 화재 폭발 사고의 책임은 고인인 기술이사의 책임임. (고인이 6개월 가동 중단 필요하다고 한 주장은 제외하고 뒤집어 씌우기)
-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인정하나 경영책임자는 박중언임. 6월24일 화재 폭발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없으므로, 화재참사와 인과관계가 없음

***아리셀 주장의 요지 :**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는 박순관이 아니라 박중언이고, 6월24일 화재 참사는 원인불명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박중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3. 민사소송 현황 (2025년 6월9일 수원지법 접수)

1) 경과

- 참사 이후 아리셀은 2024년 7월5일 상견례 이후 피해자 유족과 집단교섭 거부. 피해자 개별로 보상 합의 중용. 이후 집단 교섭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음.
- 이주노동자의 보상 기준을 ‘중국 길림성 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가, 지탄을 받고 한국 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제시. 처벌불원서 작성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하지 않았다고 일절 언급 없고, 개별 노동자에게 합의 중용만 지속
- 아리셀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에스코넥, 아리셀, 박순관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짐. 김앤장이 에스코넥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했으나, 기각되었음. 법원은 에스코넥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인정한 것임.
- 집단교섭과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아리셀 측에 맞서 집단 민사소송 결정

2) 집단 민사소송의 의미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소송을 통해 진행된 사례는 없었음. 대부분의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안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박순관은 참사가 발생하자 에스코넥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아리셀은 기업 정리 수순에 들어감.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도 하지 않고, 집단교섭도 거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일절 반영 없이 일방적인 보상 기준, 처벌불원서 요구하며 합의 중용.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 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음. 이에 아리셀 참사 피해 유가족들은 처벌불원 요구를 거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됨

둘째. 모회사 에스코넥의 책임을 묻는 소송

- 아리셀은 에스코넥이 96%의 주식 소유, 아리셀의 대표이사이자 에스코넥의 대표이사인 박순관 등 이사회 구성.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있음.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재무를 직접 관리하는 등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공장에 불과함.
-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압류 신청에서 법원은 2024년 11월6일 에스코넥에 대한 가압류신청 결정. 형사재판에서는 에스코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에 민사소송에서 에스코넥의 책임을 묻는 것임.

셋째. 이주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배상을 위한 일실이익 산정

- 희생된 이주 노동자들의 일실 이익은 도시지역 보통 인부 기준으로 되어야 함
-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한 것이 인정되었고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것임. 이에 최소한 아리셀 정규직 생산직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4. 재발 방지 대책 현황

1) 이주노동자,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증가

- 평균 10% 내외인 이주노동자 사망. 2025년 1분기 20명 사망. 14.6%.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제조업 전체 노동자 사망 중 이주노동자는 사망은 7명으로 24.1%에 달함
- 50인미만 제조업 19명 사망. 전년 동기 대비 6명 (46.2%) 증가

2) 불법파견, 쪼개기 경영 에스코넥 면죄부

- 산업단지 영세제조업체 중심 229개소 불법파견 감독.
- 190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불법파견 87개소 적발

- 불법파견 대책은 없고, 컨설팅, 파견 확대 주장 지속
-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 불법파견 감독, 그러나, 에스코넥은 면죄부. 1차, 2차 하청만 처벌
- 모기업 에스코넥의 쪼개기 경영에 대해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모두 면죄부

3) 맹탕 정부 대책 그나마 집행 실적도 거의 없어

- 정부는 8월13일 이주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대책 9월10일 전지산업 대책발표
- 8월 발표 대책은 80%이상이 기존에 발표했던 재탕 맹탕 대책. 그마저 집행실적 없음
- 이주노동자 안전강화 사업장 지원은 3개 사업장,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시설 지원 26개 사업장
- 비자별 이주노동자 전체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용역과 간담회 4번하고 끝. 각종 이주노동자 교재에 안전분야 한 두쪽 끼워넣기, 홈페이지 게시가 전부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리더는 47명에 불과하고, 사업실적 제시도 없음
- 위험성 평가는 고용, 국적과 상관없이 한다는 정의 규정만 변경, 화재폭발 대피 교육은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 명시뿐임. 사업주 실시에 대한 강제는 없음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질화의 핵심인 <공동안전보건관리자>는 법 제도 개선 없이 한시적 사업 실시. 노동부 2026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제출.
- 전지 산업 대책은 전반적인 집행 여부 점검도 없고, 전지산업 PSM 도입도 연구용역 진행만 함.

첨부 자료 3. 박순관 강력 처벌 요구 서명지

23명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 간 아리셀 박순관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처벌하라
 아리셀에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는 작업의 위험,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알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화재 폭발로 흩어진 시신을 제대로 수습조차 하지 못한 피해 유가족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순관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단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셀과 박순관은 ‘알 수 없는 사고였다’ ‘박순관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개월 가동 중단’ 을 건의했던 고인이 되신 망자에게 사고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첫째, 아리셀은 안전교육이나, 비상 대피요령은커녕 작두로 리튬 밧데리를 자르고, 별도 비상구는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군납 밧데리 시험 결과 조작, 불법과전 등 각종 법 위반을 했으며, 무엇보다 실제로는 100명 이상 일하고 있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종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수천, 수 만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하청작업의 원청책임을 가리는 것도 아닌 아리셀 참사에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박순관의 경영책임자 논란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셋째,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도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임의 동행명령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어려운 생계와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보상의 전제로 처벌불원서를 강요하는 합의 종용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쪼개기 경영과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23명의 집단 산재 참사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개인적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 행위이다’ 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법의 취지를 살려 매년 2,400명이 죽고 또 죽는 일터의 현실이 바뀔수 있다는 희망을 노동자 시민이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번호	소속	이름	서명